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별표3의2의 정원 2명(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(생 략) 제2조 (생 략) 제3조 (생 략) 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(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.	총리령 제1714호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 (현행과 같음) 제3조 (현행과 같음) 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하고 있는 별표3의2의 정원 2명(행정 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)은 2026년 5 월 31일까지 존속한다.